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2151호

발의연월일: 2026년 8월 24일
발 의 자: 박수규 의원, 김선호 의원, 박명우 의원, 김명진 의원, 윤명수 의원, 김명회 의원, 김용균 의원, 최재인 의원

1. 개정이유

❍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되어 심의를 위한 회기때마다 구성·해산을 반복함에 따라 예산·결산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상시적인 예산·결산 심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기존 특별위원회 규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을 분리하여 새로운 조로 규정함(안 제7조3 신설)

다. 위원 개선에 관한 절차를 조례에 명시함(안 제9조)

라. 그 밖에 단어,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6. 8. . ~ 2026. 9.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심사·처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를 “심사·처리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을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기금 결산을 포함한다)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임기를 1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의3(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위원회”를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의 선임)”을 “(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선임은 의장이 각 정당”을 “선임 또는 개선은 의장이 각”으로, “선임한다”를 “처리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총무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위원회”를 “특별위원회의”로, “선임한다”를 “선임 또는 개선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 심사·처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 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 ---- 전국동시지방선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상임위원회 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장) ① ----------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삭 제>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 설>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기금 결산을 포함한다)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임기를 1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 설>	제7조의3(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③ (생 략)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각 정당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연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9조(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 ① --- 선임 또는 개선은 의장이 각 ---------- 처리한다. --- 행정문화위원회----------. ② 특별위원회의 ----------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2152호

발의연월일: 2026년 8월 24일

발 의 자: 최재인 의원, 김덕주 의원, 전영옥 의원

1. 개정이유

❍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원대상을 조례에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25. 12. 15.)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대상에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조례에 재규정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시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대상인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조례에 재규정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6. 8. . ~ 2026. 9.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수거지역에 거주하는”을 “폐기물수거지역의”로, “자에”를 “자 또는 시설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필요하다고”를 “시장이 필요하다고”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중 폐기물 수거지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 폐기물 수거지역의 ---------- 자 또는 시설에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 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2. ~ 5. (생 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6.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 ---------- -- 시장이 필요하다고 ---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최재인 의원**

❍ 제안이유: 지난 조례 일부개정(‘25. 12. 15.) 과정에서 누락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대상에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Ⅱ 주요내용

❍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대상인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조례에 재규정함 (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자원순환과) 종합의견: 개정 타당, 일부 수정 필요**

- 본 개정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체계적이고 공정한 행정 이행을 도모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므로 개정 타당함

- 다만, 조례 이해를 돕기위한 일부 문구 수정 필요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개정 적법, 일부 수정 필요**

- 본 개정안은 기존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을 통해 수수료를 감면받던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명시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 다만, 중복 삭제 및 국문법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 필요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중 폐기물수거지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중 폐기물수거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설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문장 내 호응 및 이해를 돕기 위한 문구 수정
제22조(수수료의 감면)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중복 삭제

V 참고사항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붙임1]**

❍ 예산조치: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붙임2]**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6A충남당진037) **[붙임3]**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금번 개정사항은 조례 일부개정('25. 12. 15.) 과정에서 누락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대상에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아래의 제정 수반 요인이 있음

○ (추가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주요내용)

1. 수급자 : 일반용봉투(20ℓ기준)를 1세대당 매월 60ℓ지급

※ 1세대당 매년 36매, 지원금액 18,360원 (20ℓ 판매가격 510원 기준)

2.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 수용인원 1명당 매월 20ℓ

※ 1명당 매년 12매, 지원금액 6,120원 (20ℓ 판매가격 510원 기준)

○ (추정예산) 13,174,560원

1. 수급자: 5,192가구 x 3매(20ℓ) x 12개월 x 70원(제작비) = 13,083,840원
2. 사회복지시설: 108명 x 1매(20ℓ) x 12개월 x 70원(제작비) = 90,72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금번 개정사항은 조례 일부개정('25. 12. 15.) 과정에서 누락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대상에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아래의 제정 수반 요인이 있으나, 상기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에 의해 미첨부 함

4. 작성자 : 농업환경국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충남당진037			
정 책 명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자원순환과		
	담당자명	박경서	전화번호	041-350-431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6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원순환과)	*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 · 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없음 / 3-2 : 해당사항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6월 29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박상희/041-350-3738)

자원순환과장 귀하

붙임4 **의원발의 조례안(윤명수 의원)**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